

친환경 구매정책

제 1 조 (정책목적과 적용범위)

- 1.1 이 정책은 SK 에코플랜트(이하 회사)의 구매팀에서 수행하는 친환경제품 구매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1.2 이 정책은 친환경제품을 정의하고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와 실적집계를 위하여 수행해야 할 업무기준을 제시한다.

제2조 (친환경제품의 정의)

이 정책에서 사용 하는 친환경제품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- ① "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"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제품
- ② "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한 우수재활용제품
- ③ "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"에 의한 저탄소제품
- ④ "에너지이용 합리화법"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및 에너지효율표시 1~2등급 제품
- 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인증하는 HB(Healthy Building Material) 마크 제품
- ⑥ 상기 외 공공기관에서 신규 도입한 인증 및 해당 인증제품
- ⑦ 당사에서 자체 정립한 인증체계와 기준 상 친환경제품에 해당되는 제품

제3조 (친환경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)

- 3.1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매계획의 수립·발주, 자료조사,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- 3.2 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범위 확대를 위해 당사가 구매하는 전체 자재를 대상으로 '친환경성 향상 가능성과 효과성 검토를 통해 자체 인증체계와 기준을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Update 해야 한다.

제4조(친환경제품 구매계획)

- 4.1 구매팀은 매년 해당 사업연도 발주예정 전체품목을 검토하여 친환경제품의 구매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4.2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친환경제품 구매실적 목표치
 - ② 전년도 친환경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분석과 확대방안
 - ③ 친환경제품 관련 유관부서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

제 5 조 (친환경제품 구매의무)

구매팀은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①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품목에 친환경제품이 없는 경우
- ② 친환경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.
- ③ 친환경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예산 내에 구매가 어려운 경우
- ④ 친환경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- ⑤ 발주처나 사업부문의 요청 또는 현장 별 상황에 따라 친환경제품 외의 특정 품목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

제6조 (Business Partner 관리)

6.1 구매팀은 등록 BP 들의 친환경인증 제품 보유현황 및 추가 인증계획을 수시로 확인한다

6.2 구매팀은 친환경제품과 친환경제품을 제조하는 BP 를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Incentive 를 부여함으로써 BP 들의 친환경 신규인증 또는 인증확대를 독려한다.

제7조 (친환경제품의 구매실적)

7.1 구매팀은 구매계획에 따른 친환경제품의 구매실적을 매월 집계하고, 계획 대비 차이가 있을 경우, 이에 대한 분석을 하여 필요시, Catch-up 방안을 마련한다.

7.2 구매팀은 친환경 제품 구매실적 집계의 자동화, 체계화를 위해 구매시스템(TOMMS)을 지속적으로 Upgrade 한다.

제8조 (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한 협조요청)

구매팀은 친환경제품의 구매확대를 위하여 사업부문의 유관부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 (현장구매자재의 친환경제품 구매촉진 등)

친환경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사규상 현장구매로 분류되어 현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중 친환경제품 품목이 있는 경우 제 5조(친환경제품 구매의무)를 적용한다.

제10조(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)

구매팀은 친환경구매 관련 담당자를 지정하고 회사의 구매관련 담당자와 유관부서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.